

부산지방법원 2022. 10. 13 선고 2021가단3261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재옥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9. 29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,887,032원 및 그 중 4,525,233원에 대하여 2021. 6. 22.부터 2021. 7. 13.까지는 연 7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3. 20.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1,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신용보증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고 한다).

나. 피고는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이행을 2021. 1. 19.부터 연체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. 6. 22. B은행에게 피고의 대출금채무 잔액 4,525,2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라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 7%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마.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87,610원을 지출하였고, 그 중 125,811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법적절차비용은 361,799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합계 4,887,032원 및 그 중 구상금 4,525,2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. 6. 2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. 7. 13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연 7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최영